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예산(안)』 - 감사담당관

#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12. 3.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2025년도 예산(안) - 감사담당관』

##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458호로 2024년 11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2025년도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42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3. 예산규모(총괄)

가.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 예산액(안)      | 전년도 예산액     | 증감액        | 증감률(%) |
|-----------------|-------------|-------------|------------|--------|
| 총 계             | 922,849,835 | 893,542,420 | 29,307,415 | 3.28   |
| 일반회계            | 896,061,346 | 870,046,535 | 26,014,811 | 2.99   |
| 특별회계            | 26,788,489  | 23,495,885  | 3,292,604  | 14.01  |
| 의료급여            | 677,164     | 540,000     | 137,164    | 25.40  |
| 발전소주변지역<br>지원사업 | 52,200      | 45,300      | 6,900      | 15.23  |
| 주 차 장           | 24,312,125  | 21,617,585  | 2,694,540  | 12.46  |
| 건축안전            | 1,747,000   | 1,293,000   | 454,000    | 35.11  |

## 나. 주요재원(총괄)

### ○ 일반회계 ..... 896,061,346천원

- 지방세수입 ..... 222,098,628천원
- 세 외 수 입 ..... 85,607,418천원
- 지방교부세 등 ..... 10,406,000천원
- 조정교부금 등 ..... 102,303,648천원
- 보 조 금 ..... 408,165,852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67,479,800천원

### ○ 특별회계 ..... 26,788,489천원

- 의료급여기금 ..... 677,164천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2,200천원
- 주차장 ..... 24,312,125천원
- 건축안전 ..... 1,747,000천원

## 4. 2024년도 명시이월(총칙 제5조)

- 대림3동 공공복합 청사건립 등 15개 사업 ..... 17,883,540천원

## 5.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편성 내역

가. 세입예산: 해당없음.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쪽수  | 세부사업                           | 2025예산(안) | 2024예산  | 증감액     |
|-----|--------------------------------|-----------|---------|---------|
|     | 합 계                            | 269,718   | 336,959 | △67,241 |
| 223 |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 129,680   | 134,690 | △5,010  |
| 223 | 행정감사 실시(자체, 외부기관)              | 44,178    | 44,511  | △333    |
| 223 | 구정 청렴도 향상                      | 66,932    | 68,572  | △1,640  |
| 224 | 공직자재산등록 관리                     | 1,780     | 2,420   | △640    |
| 224 |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                   | 12,140    | 13,937  | △1,797  |
| 225 | 적정한 계약원가 심사추진                  | 4,650     | 5,250   | △600    |
| 225 | 비위예방 강화 및 공직 투명성 확보            | 1,900     | 1,900   | 0       |
| 225 | 조사업무관리                         | 1,900     | 1,900   | 0       |
| 225 | 사람중심, 행복한 삶을 위한 인권<br>영등포구 구현  | 14,400    | 36,400  | △22,000 |
| 225 | 인권증진사업                         | 14,400    | 36,400  | △22,000 |
| 225 | 생활 속 주민불편 및 갈등해결 고충<br>민원 관리   | 19,200    | 49,360  | △30,160 |
| 225 | 주민불편 및 갈등해결 고충민원 관리            | 10,500    | 40,300  | △29,800 |
| 226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 3,300     | 3,300   | 0       |
| 226 | 감사담당관 민원실 운영                   | 5,400     | 5,760   | △360    |
| 226 |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현장<br>중심의 순찰 강화 | 13,514    | 13,880  | △366    |
| 226 | 예방기능을 강화한 현장중심의 순찰<br>활동 전개    | 13,514    | 13,880  | △366    |

|     |             |        |        |        |
|-----|-------------|--------|--------|--------|
| 227 | 기본경비(감사담당관) | 91,024 | 96,899 | △5,875 |
| 227 | 기본경비        | 91,024 | 96,899 | △5,875 |

#### 다. 세출예산 규모

- 구 전체예산의 0.03%인 2억 6,971만원이 편성되어  
2024년도 예산 3억 3,695만원 대비  
6,724만원이 감액(19.96%)됨.

#### 라. 주요 사업 증감내역 및 검토

- p225 인권증진사업은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위원회 운영, 구민 안전 지킴이단 운영 등을 통해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존엄한 삶의 권리를 누리는 인권 도시 영등포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2024년 대비 2,200만원 감액된 1,440만원 편성.

이는 '24년 편성되었던 제3기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이 종료되어 2,200만원이 미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임.

- p225 주민불편 및 갈등해결 고충민원 관리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고충민원의 관리를 통해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고질·반복 민원에 대한 행정력 낭비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대비 2,980만원 감액된 1,050만원 편성.

이는 고질·반복 민원에 대해 전문가 등을 통한 자문을 지원받고자 '24년 신규편성된 사업이나, 실질적인 운영 결과 적정규모에 맞게 13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행정전문가 자문료의 경우 2024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는 “악성

민원 해소 외부 전문가(행정사 및 변호사) 인력풀 활용” 사업에서 변호사는 기획예산과에서 자문 변호사를 활용하고 있기에 중첩되는 것으로 판단해 행정사 자문료만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2,850만원 감액 편성됨.

마. 명시이월사업 : 해당 없음.

바. 주민참여예산 : 해당 없음.

사. 기금 : 해당 없음.

# 참 고 자 료

## 1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